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
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
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	지원기관
--	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97